

[별첨] 신진·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별지 제1호] 사업신청 관련 서식

연번	서식 명	비 고(필수 제출여부)
①	신진·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필수
②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청렴서약서	필수
③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필수
④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필수
⑤	항목별 평가표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용서식

[별지 제2호] 협약 관련 서식

연번	서식 명	비 고(필수 제출여부)
①	협약서	필수
②	지원금 지급 요청 및 서약서	필수
③	사용인감계	선택
④	월별 급여지급 계획서	필수

[별지 제3호] 보고 및 기타 신청 관련 서식

연번	서식 명	비 고(필수 제출여부)
①	연구성과 (연차, 최종) 보고서	필수
②	지원금 (연차, 최종) 정산보고서	필수
③	협약포기 또는 해약 사유서	필수
④	신진·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현장실태조사표	필수
⑤	분기별 신진·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지원인력 점검표	필수

신진·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1>

1 지원인력(연구인력) 정보

1)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YYYY. MM. DD	나이(만)		성별	남/여
휴대전화		E-mail		내/외국인			
병역이행여부	<input type="checkbox"/> 필 <input type="checkbox"/> 미필 <input type="checkbox"/> 면제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전공(학과)		학위취득번호		학위취득일			
신청학위 (지원분야)	<input type="checkbox"/> 학사 <input type="checkbox"/> 석사 <input type="checkbox"/> 박사			학위취득학교			
신청기업 재입사 여부	<input type="checkbox"/> 신규입사 <input type="checkbox"/> 재입사(이전 퇴사일:YYYY.MM.DD)			신청기업 고용보험 최종 가입여부		<input type="checkbox"/> 가입예정 <input type="checkbox"/> 가입완료(가입일: . . .)	

2) 주요 경력사항

기간		근무기관	근무부서	직위
시작일	종료일			
YYYY.MM.DD	YYYY.MM.DD	○○(주)	개발팀	선임
YYYY.MM.DD	YYYY.MM.DD	(주)△△	연구소	책임

3) 연구내용 및 향후계획

주요내용	- 연구개발 경험 - 주요 연구개발 분야
기타 활동 내용	- 논문명(게재/발표연도 포함), 특허명(출원·등록일 포함), 수상명(수상내용) 등 - 기타 주요 연구개발 수행 실적 등 기술
입사 후 연구 활동 계획	- 입사 후 연구개발 활동 계획

2 자가진단

과제명	신진·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확인사항			해당 있음	해당 없음
1.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인은 사업 공고문 등에서 정한 신청 자격을 갖고 있나요?			
2.	현재 신청기업은 사업 공고문 등에서 정한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나요?			
3.	현재 신청인은 국가R&D 참여제한 중인가요?			
4.	신청기업(법인, 등기이사 포함) 및 신청인은 인건비 유용 또는 허위거래로 정부 R&D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나요?			
5.	현재 신청기업은 부도기업인가요?			
6.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인은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나요?			
7.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인은 민사집행법 또는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있나요?			
8.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인은 법원에서 파산, 회생절차, 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나요?			
9.	최근 신청기업은 최근 년도 결산 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요?			

※ 1, 2번 항목은 붙임의 상세 체크리스트 확인 후 작성

본 신청인은 위 사항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제외 또는 선정 취소 등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이의가 없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법인명 :

직인

붙임. 상세 체크리스트 (신진)

※ 자가진단 1, 2번 항목을 작성하시기 전에 상세 체크리스트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지원 자격	확인사항	확인
자격 검증	지원 인력 자격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자*인가 ※ 전문학사는 포함되지 않음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인력*인가	
		채용 연구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 공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고일이전까지 채용자 또는 채용예정자*	
		협약예정일 전까지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을 완료할 수 있는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전담요원	
		기존에 본 사업* 으로 기지원 받은 이력이 없는가 * 구) 중소기업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 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기술 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신진, 고경력),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신진, 고경력), 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확충사업, 초·중급 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인력은 자격 제외	
		신청기업의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아닌가 ※ 신청기업의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자격 제외	
		신청기업에서 퇴사하고, 1년 이내에 재입사한 이력은 없는가 ※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하여 동일기업에 1년 이내 재입사자는 자격 제외	
		타 정부사업을 통해 현금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는가 ※ 협약 예정일 기준, 타 정부사업을 통해 현금 인건비를 지원 받고 ※ 있는 자 또는 지원받을 예정인 자는 제외 ※ (본사업 협약 이후에는 현금인건비 이중수혜가 불가하며, 지원인력의 연봉에서 정부지원금/년을 제외한 금액만큼 타 정부 사업에 인건비 현물로만 계상(참여) 가능 ※ 단, 과제 신청시에는 타 정부사업을 통해 현금인건비를 받고 있었으나, 협약 ※ 체결 이후 타 정부사업의 변경신고를 통해 현금인건비를 받지 않도록 ※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능	
		사업 공고일 기준 대한민국 국민인가 ※ 단, 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은 가능	
		(남성) 신청 마감일 기준, 군 복무자 또는 군복무 예정자는 아닌가 ※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포함 군 복무자나 군 복무 예정자는 자격 제외	
기업 자격	기업 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거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	

구분	서식명	확인사항	확인
필수 제출 서류	요약문, 본문 2	본 사업공고에 첨부된 [접수매뉴얼]에 따라 온라인시스템을 입력하였는가 ※ 대표자, 행정담당자, 연구인력은 각각 반드시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 신청접수는 세 분 중 한 분의 아이디로 진행	
	본문 1	공고 시, 제공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업로드 하였는가	
	사업자등록증	신청기업의 본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였는가 ※ 지점 사업자등록번호로 신청 및 증빙 불가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신청기업의 2개년도 공시된 표준재무제표증명(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을 국세청 발급분으로 제출했는가 ※ 사업접수 마감일 기준 설립 3년 미만기업은 미제출 가능 ※ 가결산 서류(세무사 또는 회계사 날인본)은 불인정	
	학위증명서 (최종학위)	(최종학위) 학사, 석사, 박사 중 최종학위 증명서를 제출하였는가 (해외학위) 번역공증 또는 번역확인증명서를 함께 첨부하였는가 ※ 번역공증 또는 번역확인증명서 미제출시 학위증명서 불인정 (당해연도 학위취득예정자) 학위수여 예정증명서를 제출하였는가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지원인력 명의의 발급 서류이고 공고일 이후 출력한 문서인가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인가 ※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내역서 및 건강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는 불인정 신청인력의 가입이력이 모두 나오도록 발급되었는가 ※ 전체이력을 선택하여 발급, 일부 이력만 선택하여 출력할 경우 불인정	
	차별성 검토 보고서	NTIS 차별성 검토 결과 유사한 과제가 없는가 ※ NTIS(www.ntis.go.kr)회원가입 후 유사도를 60%로 설정하여 차별성 검토 시행	
	병적증명서	만 40세 이하 남성의 경우 병적증명서를 제출하였는가 ※ 남성의 경우 군필 또는 군면제자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산업재산권, 기술인증 증빙자료	연구개발계획서 1. 신청기업의 역량 2)기업의 산업재산권 및 기술인증 보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가 ※ 출원증, 등록증, 기술인증서 등	
	우대 가점 해당 시 제출	(내일채움공제) 신청인력의 내일채움 공제 가입증서	신청인력의 내일채움공제 가입증서를 제출하였는가 ※ 신청인력정보 확인 가능한 증서 제출 ※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5년 만기)만 우대가점 해당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해당)
(채용예정자) 신청인력의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신청인력의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신청인력 본인이 직접 출력(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홈페이지) - 공고일 이후 발급, 전체이력을 모두 선택하여 발급한 문서만 인정 ※ 필수제출서류와 중복될 경우에도 중복제출	
첨단기술분야 확인서		신청기업의 사업추진 분야 및 연구분야가 첨단기술에 해당될 경우 추가로 제출하였는가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 선정기업 확인서		최근 3년이내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에 선정되었는가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서		과기부장관으로부터 지정된 우수기업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인가	
여성기업 확인서		신청기업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가	
장애인등록증 (확인필)		신청기업이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가	
기술자료임치증	최근 3년이내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지원과제 협약기간이 종료된 과제의 기술자료 임치가 진행되었는가		

붙임. 상세 체크리스트 (고경력)

※ 자가진단 1,2번 항목을 작성하시기 전에 상세 체크리스트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지원자격	확인사항	확인
자격 검증	지원인력 자격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를 취득 하였는가 ※ 전문학사는 포함되지 않음	
		학위 취득 이후, 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에서 연구경력이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 인가 * 연구경력 인정 기준 : 학위 취득일 이후의 고용보험(또는 건강보험) 가입 기간 중에서 경력증명서 상의 연구경력으로 기재된 기간만 인정 (다만, 연구경력은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또는 연구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채용 연구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 공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고일이전까지 채용 인력 또는 채용예정 인력	
		협약예정일 전까지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을 완료할 수 있는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전담요원	
		기존에 본 사업* 으로 기지원 받은 이력이 없는가 * 구) 중소기업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 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신진, 고경력),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신진, 고경력), 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확충사업, 초·중급 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인력	
		신청기업의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아닌가 ※ 신청기업의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자격 제외	
		신청기업에서 퇴사하고, 1년 이내에 재입사한 이력은 없는가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하여 동일기업에 1년 이내 재입사자는 자격 제외)	
		타 정부사업을 통해 현금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는가 ※ 협약 예정일 기준, 타 정부사업을 통해 현금 인건비를 지원 받고 있는 자 또는 지원받을 예정인 자는 제외 (본사업 협약 이후에는 현금인건비 이중수혜가 불가하며, 지원인력의 연봉에서 정부지원금/년을 제외한 금액만큼 타 정부 사업에 인건비 현물로만 계상(참여) 가능 ※ 단, 과제 신청 시에는 타 정부사업을 통해 현금인건비를 받고 있었으나, 협약체결 이후 타 정부사업의 변경신고를 통해 현금인건비를 받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능	
		사업 공고일 기준 대한민국 국민인가 ※ 단, 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도 가능	
		(남성) 신청 마감일 기준, 군 복무자 또는 군복무 예정자는 아닌가 ※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포함 군 복무자나 군 복무 예정자는 제외	
기업 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에 의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		

구분	서식명	확인사항	확인
필수 제출 서류	요약문, 본문 2	본 사업공고에 첨부된 [접수매뉴얼]에 따라 온라인시스템 입력하였는가 ※ 대표자 행정담당자 연구인력은 각각 반드시 smtech에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 신청 접수는 세 분 중 한 분의 아이디로 진행	
	본문 1	공고 시 제공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업로드 하였는가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신청기업의 2개년도 공시된 표준 재무제표증명(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을 국세청 발급분으로 제출했는가 ※ 사업접수 마감일 기준 설립 3년 미만 기업은 미제출 가능 ※ 가결산 서류(세무사 또는 회계사 날인본)은 불인정	
	사업자등록증	신청기업의 본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였는가 ※ 지점 사업자등록번호로 신청 및 증빙 불가	
	학위증명서(신청학위)	(신청학위) 학사, 석사, 박사 중 해당하는 학위증명서를 제출하였는가	
		(해외학위) 번역공증 또는 번역확인증명서를 함께 첨부하였는가 ※ 번역공증 또는 번역확인증명서 미제출시 학위증명서 불인정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지원인력 명의의 발급 서류이고 공고일 이후 출력한 문서인가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인가 ※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내역서 및 건강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는 불인정	
		신청인력의 가입이력이 모두 나오도록 발급되었는가 ※ 전체이력을 선택하여 발급, 일부 이력만 선택하여 출력할 경우 불인정	
	경력증명서 (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	경력증명서 상 기관장 날인이 되어 있는가	
경력증명서 상에 연구개발 업무 또는 연구개발 관련 부서임이 확인되는가			
(해외경력) 해당 기관장의 확인(서명 등)이 있으며 근무 기간이 함께 명시 되어 있는가			
(해외경력) 번역공증 또는 번역확인증명서를 함께 첨부하였는가 ※ 번역공증 또는 번역확인증명서 미제출시 경력증명서 불인정			
	(폐업으로 인해 경력확인 어려운 경우) 폐업사실 증명을 고경력 연구인력지원사업 사무국으로 접수 마감전까지 제출하였는가 ※ 폐업으로 인한 경력증명서 발급 불가시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국세청 홈택스 발급)을 접수 마감 전날까지 제출한 인력에 대해서만 연구전담요원 기준이력 여부 조회가능(상세내용은 FAQ참조)		
차별성 검토 보고서	NTIS 차별성 검토 결과 유사한 과제가 없는가 ※ NTIS(www.ntis.go.kr)회원가입 후 유사도를 60%로 설정하여 차별성 검토 시행		
병적증명서	만 40세 이하 남성의 경우 병적증명서를 제출하였는가 ※남성의 경우 군필 또는 군면제자에 한하여 지원가능 필수 제출		
해당 시 제출 서류	산업재산권, 기술인증 증빙자료	연구개발계획서 1. 신청기업의 역량 2)기업의 산업재산권 및 기술인증 보유 :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가 ※ 출원증, 등록증, 기술인증서 등	
우대 가점 해당 시 제출	(내일채움공제) 신청인력의 내일채움공제 가입증서	신청인력의 내일채움공제 가입내역 ※ 신청인력정보 확인 가능한 증서 제출 ※ 중소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5년 만기)만 우대가점 해당(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해당)	
	(채용예정자) 신청인력의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신청인력의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신청인력 본인이 직접 출력(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홈페이지) - 공고일 이후 발급, 전체이력을 모두 선택하여 발급 한 문서만 인정 * 해당서류 이외에는 인정불가	

		※ 필수제출서류와 중복될 경우에도 중복제출	
	첨단기술분야 확인서	신청기업의 사업추진 분야 및 연구분야가 첨단기술에 해당될 경우 추가로 제출하였는가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 선정기업 확인서	최근 3년 이내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에 선정되었는가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서	과기부장관으로부터 지정된 우수기업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인가	
	여성기업 확인서	신청기업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가	
	장애인등록증(확인필)	신청기업이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가	
	기술자료임치증	최근 3년 이내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지원과제 협약기간이 종 료된 과제의 기술자료 임치가 진행되었는가	

1. 기술개발 목표

* 최대 2페이지

1) 기업의 성장가능성 및 CEO의 의지, 기업의 근무환경 수준

2) 기업의 산업재산권 및 기술인증 보유현황

번호	산업재산권/ 기술인증 종류	인증기관	출원일, 등록일, 인증일	인증서(허가)번호	유효기간
1	특허출원	특허청	2024.2.1	제1111호	2024.12.31
2	NET인증	산기협	2022.1.1	제1111호	2025.1.1
3					
4					
5					
6					
7					
8					
9					
10					

※ 산업재산권은 특허 출원 및 등록만 기재, 기술인증은 NET, NEP, 녹색인증, 혁신제품만 기재

※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및 기술 인증은 10개까지만 작성

※ 증빙자료(출원증, 등록증, 인증서 등)는 SMTECH 신청 서류에 반드시 제출하고, 미 제출시 정량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3) 기업이 보유한 연구시설 및 장비, 외부자원 활용계획

2. 연구개발 방법

* 최대 10페이지

※ 기업 지원인력(연구인력)을 활용한 연구개발 계획을 기재

1. 연구개발의 개요 및 현황

※ 개요 : 전체 연구방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안한 연구의 개념을 핵심어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술
현황 : 제안한 연구과제와 관련한 국내·외 연구현황, 기존연구의 문제점 등 기술

2. 연구개발 필요성

※ 기존 연구 대비 본 연구의 차별성 및 연구의 중요성(필요 시 대상 기술의 경제적·산업적 중요성 및 앞으로의 전망 포함)에 대하여 기술

3. 연구개발 목표 및 계획

1) 연구개발 최종목표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제품)의 수준, 성능, 품질 등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되 가급적 정량적(목표달성도 지표 등)으로 기술
<정량적 목표(지표) 예시>

평가항목 (주요성능 spec)	단위	달성목표	국내·외 최고 수준	평가방법
축매 생산성 강화 - 축매 50g당 PAG 2.5kg 생산시까지 전환율 95%유지	%	≥95%	95.3%	공인시험검사

※ 평가항목은 반드시 1개 이상 작성하되, 과제 종료 후 최종 평가시 달성여부를 검토할 예정

2) 연구개발 계획

- 1차년
- 2차년
- 3차년

3. 연구개발과제의 지원인력 역할

4. 연구개발 연차별 일정

3. 기대효과

* 최대 1페이지

<p>연구 결과가 기업에 가져올 수 있는 성과목표</p>	<p>기술개발, 기술사업화, 매출/수출/고용창출 등</p>
<p>연구인력 수급 안정화 효과</p>	
<p>연구결과의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인력이 기업에 가져올 수 있는 성과, 기업 기술력 제고 기여 가능성- 기대효과

4. 신청기업 현황

1) 신청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현황

법인번호	000000-0000000(13자리, 개인사업자의 경우 생년월일 8자리 입력)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국적		성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실무담당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연구소 구분	<input type="checkbox"/> 기업부설연구소 <input type="checkbox"/>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번호		
연구소 주소	지원인력이 근무하게 될 연구소의 주소 작성		인정일자	YYYY. MM. DD	
연구소 전환이력 구분	<input type="checkbox"/>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부설연구소로 전환 <input type="checkbox"/>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전환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의 주요 역할 및 기능	- 기업 내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의 주요 역할 - 보유 역량 및 노하우 등				

2) 신청기업의 연구인력 부족률 현황

(단위: 명)

구분	사업신청일 기준(1차년도)		2차년도
	보유연구인원	부족연구인원	채용계획 연구인원
학사			
석사			
박사			
소계			

* 보유연구인원: 귀사에 종사하고 있는 전체 연구인력 수(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포함)

* 부족연구인원: 귀사가 정상적인 연구개발수행, 시장환경 및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보다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연구인력 수(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포함)

5. 연구비 사용계획

□ 연차별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획(월별 급여지급 계획서)

(단위 : 원)

구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정부지원금)(A)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업부담금)(B)	소계(A+B)
1차년	20XX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C)				

(단위 : 원)

구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정부지원금)(A)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업부담금)(B)	소계(A+B)
2차년	20XX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C)				

(단위 : 원)

구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정부지원금)(A)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업부담금)(B)	소계(A+B)
3차년	20XX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C)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청렴 서약서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인(이하 “본인”)은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 ① 본인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물론 누구에게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청탁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 ② 본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전문기관에 대해 일체의 금품, 향응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 ③ 본인은 위 사업의 신청 및 평가와 관련하여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중개인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 ④ 본인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 ⑤ 본인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전문기관으로부터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단호히 거절할 것을 약속합니다.
- ⑥ 본인은 국가 R&D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개발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사용 방지를 위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 자체의 연구개발비 통제·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을 확약합니다.
- ⑦ 본 회사의 대표자(또는 연구책임자)는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을

대상으로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사항 등 연구개발비 부정집행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것을 약속합니다.

- ⑧ 본인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참여제한, 환수,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제재와 형법에 따른 형사고발 등의 조치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향후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제재, 민형사상 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 처분이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기업(관)명 : *기업명기재* 동의 비동의 (인)
대표자 : *대표자성명기재* 동의 비동의 (인)
연구책임자 : *지원인력성명기재* 동의 비동의 (인)
행정담당자 : *행정담당자성명기재* 동의 비동의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명		
과제명		
기관(업)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지원기업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신청 및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협약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자 목록에 서명한 본인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자 목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제공된 정보는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사업관리를 위해 사용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확인, 식별, 신용(채무)조회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정보 전달 : 주소, 전자우편주소, 휴대폰번호 · 사업관리 : 경력, 최종 학력, 급여, 급여지급 계좌번호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휴대폰번호), 최종학력, 전자우편주소, 경력, 급여, 급여지급계좌번호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연구개발비 정산, 최종평가, 기술료 납부 등의 최종 절차의 종료일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5년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 등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수사항입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해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신청자격 요건에 대한 신용조회·검토 및 사업관리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연구개발비 정산, 최종평가, 기술료 납부 등의 최종 절차의 종료일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5년간

위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 등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수사항입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중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② 국세청 ③ 기술보증기금 ④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⑤ 우리은행 ⑥ 전국은행연합회 ⑦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NTIS) ⑧ 기업은행 ⑨ 하나은행 ⑩ 지정회계법인(한국공인회계사회 등록 법인 중 지정) ⑪ 한국기업데이터 ⑫ 한국연구재단 ⑬ 창업진흥원 ⑭ 창업보육협회 ⑮ 발명진흥회 ⑯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⑰ 한국산학연합회
----------------	--

<계속>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대상(1)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 재단)	제공 목적	개발과제의 기술보호 및 사후관리를 위한 핵심 기술자료의 임치에 필요한 정보 제공
	제공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학력, 전자우편주소, 경력, 급여등
	보유·이용 기간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단, 기술임치 이행여부 확인 및 독려 등을 위하여 보유·이용 기간 연장 가능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제공 동의 여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필수적 정보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국세청)	제공 목적	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점검, 연구개발비 중복집행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
	제공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학력, 전자우편주소, 경력, 급여,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내역 등
	보유·이용 기간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단, 국세청 확인 및 문제과제 점검 등을 위하여 보유·이용 기간 연장 가능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제공 동의 여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필수적 정보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③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기술보증 기금)	제공 목적	중소기업의 “개발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함으로써 고부가가치형 신제품개발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중소기업의 개발기술 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공
	제공 항목	중기부 R&D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개발을 완료한 업체로서 개발기술의 사업화가 필요한 우수 중소기업 정보 (SMTECH·IRIS 과제번호, 지원년도, 종료일자, 사업명, 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주관연구개발기관주소, 사업자번호, 대표자 성명, 본사 전화번호, 본사 FAX, 대표자전화번호, 대표자핸드폰번호, 대표자 E-mail)
	보유·이용 기간	MOU 체결('11. 8월) 후 일방당사자가 본 협력서 종료를 요청하지 않는 한 유효함. (협약 당사자간 서면합의에 의하여 개정 가능)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제공 동의 여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필수적 정보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대상(2)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중소벤처기 업진흥공단)	제공 목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부 연구 개발사업(“중기부 R&D 사업”)에 참여 중소기업의 사업화 연계지원을 목적으로 함.
	제공 항목	중기부 R&D 사업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 기술개발을 완료한 기업 정보 (S MTECH·IRIS 과제번호, 지원년도, 종료일자, 사업명, 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주관연구개발기관주소, 사업자번호, 대표자 성명, 본사 전화번호, 본사 FAX, 대표자전화번호, 대표자핸드폰번호, 대표자 E-mail)
	보유·이용 기간	MOU 체결(‘14. 4月) 후 1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의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해지에 관한 서면 통보가 없는 한 1년씩 자동 연장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제공 동의 여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필수적 정보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우리은행)	제공 목적	기정원과 우리은행이 “디딤돌 금융지원 협약”을 통해 창업성장기업들에게 창업성장에 필요한 기술창업 활성화 및 사업 성공화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창업성장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촉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동반성장의 디딤돌 역할 수행하기 위해 제공
	제공 항목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선정기업 정보 (SMTECH·IRIS 과제번호, 지원년도, 종료일자, 사업명, 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주관연구개발기관주소, 사업자번호, 대표자 성명, 본사 전화번호, 본사 FAX, 대표자전화번호, 대표자핸드폰번호, 대표자 E-mail)
	보유·이용 기간	MOU 체결(‘15. 2月) 후 3년으로 하되,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1년씩 자동 연장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제공 동의 여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필수적 정보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⑥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전국은행 연합회)	제공 목적	R&D 지원을 통해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기술금융 자금 접근성을 제고하여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고, 범 금융권의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정보 부족 문제 해결을 통한 기술금융 활성화
	제공 항목	중기부 R&D 사업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 기술개발을 완료한 기업 정보 (S MTECH·IRIS 과제번호, 지원년도, 종료일자, 사업명, 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주관연구개발기관주소, 사업자번호, 대표자 성명, 본사 전화번호, 본사 FAX, 대표자전화번호, 대표자핸드폰번호, 대표자 E-mail)
	보유·이용 기간	MOU 체결(‘15. 11月) 후 1년으로 하며, 양 기관이 협약 중지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제공 동의 여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필수적 정보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대상(3)

⑦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NTIS)	제공 목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에 의거 범부처 국가연구개발정보의 체계적인 수집·연계 및 공동 활용 기반구축 등에 활용하기 위함
	제공 항목	기본정보(한글성명, 국적, 생년월일, 성별,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과학기술표준분류별전문분야,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소속기관사항(국내외구분, 기관명, 직위, 우편번호,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재직여부), 학력사항, 경력사항, 소속 학·협회 정보, 논문 정보
	보유·이용 기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영구 관리 중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제공 동의 여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필수적 정보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⑧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기업은행)	제공 목적	시스템간의 송수신 항목 및 데이터를 일치 시키고 발생하는 민원 처리에 대하여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포인트 시스템 관리.운영상의 필요 정보 제공
	제공 항목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소속, 직위(대표자, 책임자, 참여연구원), 기업명,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업 계좌번호
	보유·이용 기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영구 보존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제공 동의 여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필수적 정보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⑨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하나은행)	제공 목적	시스템간의 송수신 항목 및 데이터를 일치 시키고 발생하는 민원 처리에 대하여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포인트 시스템 관리.운영상의 필요 정보 제공, 또한 중소기업, 지정원, 하나은행간 “중소·중견기업 R&D 사업화 지원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사업 자금관리 및 사업화 지원 업무협약서”를 근거로 하여 R&D 성공기업에 대한 사업화 연계지원 활성화(관련 상품의 홍보 및 권유포함)를 위하여 필요 정보 제공
	제공 항목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소속, 직위(대표자, 책임자, 참여연구원), 기업명,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업 계좌번호
	보유·이용 기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영구 보존 * 상품의 홍보 및 권유 목적 보유이용 기간은 동의철회 또는 동의일로부터 2년째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이후에는 관련된 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제공 동의 여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필수적 정보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선택적(상품의 홍보 및 권유) 정보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대상(4)

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회계법인)	제공 목적	지정회계기관이 기술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집행내역의 적정성을 수시로 점검하는데 활용 * 지정회계기관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연구개발비 정산을 위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지정한 회계법인(과제별 지정회계기관은 기술개발협약 완료 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별도 안내)
	제공 항목	대표자,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경력, 급여, 급여지급 계좌번호, 4대 보험 자격득실 정보 등
	보유·이용 기간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단, 기술개발과제의 정산금 및 환수금 산정, 문제과제처리 등을 위하여 보유·이용 기간 연장 가능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제공 동의 여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필수적 정보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⑪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한국기업 데이터)	제공 목적	기술개발과제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데 활용
	제공 항목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소속, 직위(대표자, 책임자, 참여연구원), 기업명,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업 계좌번호
	보유·이용 기간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단, 한국기업데이터 확인 및 문제과제처리 등을 위하여 보유·이용 기간 연장 가능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제공 동의 여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필수적 정보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⑫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한국연구 재단)	제공 목적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0조에 의거 연구개발과제의 정보 및 연구개발비 집행정보 연계 등에 활용하기 위함
	제공 항목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소속, 직위(대표자, 책임자, 참여연구원), 기업명,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업 계좌번호
	보유·이용 기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영구 관리 중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제공 동의 여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필수적 정보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대상(5)

⑬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창업 진흥원)	제공 목적	창업진흥원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사업(“중기부 R&D 사업”)에 참여 중소기업의 지원 및 사업화 연계지원을 목적으로 함.
	제공 항목	중기부 R&D 사업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거나, 기술개발을 완료한 기업 정보 (SMTECH·IRIS 과제번호, 지원년도, 종료일자, 사업명, 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주관연구개발기관주소, 사업자번호, 대표자 성명, 본사 전화번호, 본사 FAX, 대표자전화번호, 대표자핸드폰번호, 대표자 E-mail)
	보유·이용 기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영구 보존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제공 동의 여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필수적 정보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창업 보육협회)	제공 목적	창업보육협회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사업(“중기부 R&D 사업”)에 참여 중소기업의 사업화 연계지원을 목적으로 함.
	제공 항목	중기부 R&D 사업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 기술개발을 완료한 기업 정보 (SMTECH·IRIS 과제번호, 지원년도, 종료일자, 사업명, 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주관연구개발기관주소, 사업자번호, 대표자 성명, 본사 전화번호, 본사 FAX, 대표자전화번호, 대표자핸드폰번호, 대표자 E-mail)
	보유·이용 기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영구 보존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제공 동의 여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필수적 정보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⑮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발명 진흥회)	제공 목적	발명진흥회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사업(“중기부 R&D 사업”)에 참여 중소기업의 사업화 연계지원을 목적으로 함.
	제공 항목	중기부 R&D 사업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 기술개발을 완료한 기업 정보 (SMTECH·IRIS 과제번호, 지원년도, 종료일자, 사업명, 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주관연구개발기관주소, 사업자번호, 대표자 성명, 본사 전화번호, 본사 FAX, 대표자전화번호, 대표자핸드폰번호, 대표자 E-mail)
	보유·이용 기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영구 보존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제공 동의 여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필수적 정보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대상(6)

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제공 목적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부 연구개발사업(“중기부 R&D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업무체계 지원을 목적으로 함.
	제공 항목	중기부 R&D 기술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기업 정보 (SMTECH·IRIS 과제번호, 지원년도, 종료일자, 사업명, 과제명,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연구비계좌번호, 연구비계좌 예금주명) 중기부 R&D 기술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참여연구원 등의 정보 (성명, 생년월일, 과제참여시작일자, 과제참여종료일자, NTIS 과학기술인 번호로 조회된 Ci값)
	보유·이용 기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준영구 보존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제공 동의 여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필수 정보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⑪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한국산학연 협회)	제공 목적	중소기업 개방형혁신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과 대학·연구기관의 기술 파트너 및 기술개발제품의 수요처 매칭 지원을 목적으로 함.
	제공 항목	중기부 R&D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기업 정보 (SMTECH·IRIS 과제번호, 지원년도, 종료일자, 사업명, 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주관연구개발기관주소, 사업자번호, 대표자 성명, 본사 전화번호, 본사 FAX, 대표자전화번호, 대표자핸드폰번호, 대표자 E-mail)
	보유·이용 기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영구 보존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제공 동의 여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필수적 정보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자 목록

구분	기관명	수행 역할		성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기관	개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1	기업명	지원 기업	대표자	0000	(해당 시 표시)		(해당 시 표시)	
2	기업명	지원 기업	연구책임자 (지원인력)	0000	(해당 시 표시)		(해당 시 표시)	
3	기업명	지원 기업	행정담당자	0000	(해당 시 표시)		(해당 시 표시)	

대표자 : *대표자성명기재* 동의 비동의 (서명)
 연구책임자 : *지원인력성명기재* 동의 비동의 (서명)
 행정담당자 : *행정담당자성명기재* 동의 비동의 (서명)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귀하

항목별 평가표

항목별 평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정량/정성	배점	우선순위
1. 신청기업의 R&D수행역량	수행 적합성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	정량	5	3	
		산업재산권 및 연관기술 보유정도	정량	5		
	조직체계 준비도	연구전담인력 유지율	정량	5		
	기업의 근무환경수준, 지원인력에 대한 성과공유 제도 등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내일채움공제, 스톡옵션, 정주여건, 성과보상, 유연근무제 등)		정성	10		
2.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의 적정성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계획의 구체적인가		정성	30	1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과제가 필요성 및 차별성이 있는가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별 계획수립이 적절한가					
3. 연구인력의 R&D수행역량	지원인력의 전공 및 경력과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과제와 부합하는가		정성	25	2	
	지원인력의 활용목표 및 활용방안은 적절한가					
	사업의 종료 이후에도 지원인력에 대한 고용유지 계획이 있는가					
4. 지원의 효과성	과제의 성과 목표(기술개발, 기술사업화, 매출액, 수출액, 고용 등) 수준이 적절한가		정성	20	4	
	연구인력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는가					
	지원인력이 기업의 기술혁신에 기여하는가					
<정량지표별 세부 평가기준>						
수행 적합성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A)	정량	5	$30\% \leq A$	5	
				$20\% \leq A < 30\%$	4	
				$10\% \leq A < 20\%$	3	
				$0\% \leq A < 10\%$	2	
				$0\% = A$	1	
	산업재산권(특허 출원 및 등록) 및 기술인증(NET, NEP, 녹색, 혁신제품) 보유정도	정량	5	5개 이상	5	
				4개	4	
				3개	3	
				2개	2	
				0개~1개	1	
조직체계 준비도	정량	5	$150\% \leq B$	5		
			$100\% < B < 150\%$	4		
			$B = 100\%$	3		
			$50\% < B < 100\%$	2		
			$B \leq 50\%$	1		
※ 창업 3년미만 및 정량평가 불가항목은 해당 항목 최하점의 차상위 점수부여						

[별지 제2-①호]

협 약 서

■ 사 업 명 :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 과 제 명 : 신진·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 협약기간

차수	기간
1차년	
2차년	
3차년	

■ 협약 당사자

- 주관연구개발기관 :
- 지원기업 :

■ 연구개발비(당해년도)

차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A)	기관부담 연구개발비(B)	총연구개발비(A+B) (퇴직금 제외)
1차년			
2차년			
3차년			

■ 지원인력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지원 학위	
핸드폰		주소			
인건비 (연봉)	차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A)	기관부담 연구개발비(B)	합계(A+B)	
	1차				
	2차				
	3차				

※ 고경력 연구인력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1차년부터 3차년까지 동일한 금액(정부지원연구개발비 변경불가)

위 신진·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수행에 관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지원기

업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 한다.

제1조(사업의 목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향상하고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진·고경력 연구인력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인건비의 일부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달리 정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사업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신진·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기타 부속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의 신의성실 수행)

본 협약에 의한 사업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신의를 가지고 본 협약, 「국가 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규칙」,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규칙」, 요령, 지침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제4조(당사자들의 권한과 책임)

가.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1)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급
- 2) 지원기업이 수행하는 신진·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연차점검, 실태조사 및 최종평가 등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3) 지원기업의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에 대한 평가 및 정산
- 4) '1)'호부터 '3)'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부수적인 업무, 기타 운영 요령 및 지침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나. 지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 1) 신청서 등 신청서류 제출
- 2) 사업 협약체결 및 수행에 관한 종합관리
- 3) 지원금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 4) 지원인력에게 지급하기로 월별 급여지급 계획서에 명시된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
- 5) 동 사업을 통한 지원인력 활용 연구성과 보고(연차, 최종 보고)
- 6) 지원인력의 정규직 고용형태 유지 및 4대 보험 가입(유지) 의무
- 7) 지원인력에 대한 타 정부 인건비 지원사업의 현금참여금지 의무(중복지원방지)
- 8)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상시유지
- 9) 지원인력의 연구소 내 상시근무
- 10) 지원인력에 대한 근태관리 및 보고
- 11) 서류 상시 비치 및 관리의무

- 12) 기타 동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 또는 주관 연구개발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다. 지원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사업의 성과 및 지원인력 등의 정보수집·활용을 위한 사항에 동의·협력해야 한다.

제5조(연구개발비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

- 가.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동 사업의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다음과 같이 지원기업이 협약체결 시 제출한 「지원금 지급요청서」에 기록된 입금계좌(이하 “관리계좌”라 한다)로 지급한다.
- 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가’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1) 연구개발비의 절감 또는 사업기간 단축 등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는 경우
 - 2) 정부의 예산 사정,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의 개정이나 정부의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다. 본 조에 의거하여 지원기업이 본 협약 체결 시에 제출한 관리계좌로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및 발생이자를 포함한다)를 사용 및 관리해야 한다.
- 라. 그 밖에 연구개발비의 신청, 지급,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는 요령, 관리지침을 따른다.

제6조(보고서 제출 및 연구개발비 정산)

- 가. 지원기업은 연차보고서(연구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포함) 및 연구개발비 정산보고서를 협약개시일로부터 12개월 종료 후 15일 이내에 주관연구개발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나. 3차년 지원기업은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요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최종보고서(연구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포함) 및 지원금 최종정산보고서를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기업에게 연구개발비의 집행 내역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지정하는 자의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라. 지원기업은 회수금을 요령, 관리지침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요청하는 기간 내에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마. 보고서 제출 및 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요령, 관리지침을 따른다.

제7조(사업결과 평가)

가.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제6조의 자료를 검토하여 계속지원 결정 및 최종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나. 본 사업의 보고, 평가 등에 관하여 후속절차는 요령 및 지침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8조(협약의 변경)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지원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 추진에 중대한 차질이 있어 부득이 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협약의 해약)

가.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지원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 1) 사업과 관련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2)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인건비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유용한 경우
- 3) 지원인력이 퇴사한 경우
- 4) 지원기업이 지원인력을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지원인력이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이외에 타 부서 근무 또는 타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 5) 지원인력에게 급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원기업이 매월 급여지급 계획서 상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6) 각종 보고서, 증빙서류를 허위작성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 7) 지원기업의 부도, 폐업, 파산 등으로 인해 동 사업의 수행이 정지되어 향후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
- 8) 지원인력의 3개월 이상 장기휴직 등으로 동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단, 병가 등의 휴직 제외)
- 9) 지원인력이 동 사업 참여기간 동안 정부에서 시행하는 타 사업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현금으로 수혜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 10) 지원인력의 정부과제 인건비 총 참여금액이 지원인력 연봉을 초과하는 경우
※ '지원인력 연봉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타 정부사업에 인건비 현물로만 계상(참여) 가능
- 11) 신청자격 미비자(기 취업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자 등)로 밝혀진 경우

- 12)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가 취소된 경우
 - 13) 사업공고 및 관리지침 상의 지원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4) 지원인력이 기업부설연구소 비상근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15) 지원기업이 스스로 협약포기를 원하는 경우
 - 16) 지원기업 또는 지원인력이 지원자격을 지속적으로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
 - 17)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 18) 지원기업의 귀책사유로 민원 등이 발생하여 동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 19) 요령, 지침을 위반한 경우 또는 동 사업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여 지속적인 사업수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 20) 기타 지원기업 및 인력이 동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 나. 지원기업은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연구개발비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본 협약에 의거하여 지급받은 지원금의 집행내역과 사용 잔액을 주관연구개발기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정산결과에 따른 미집행 지원금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지정한 반납기한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 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본건 협약 해약에 대한 귀책사유에 따라 지원기업에게 본건 협약 제11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관련 자료의 제출 및 통지의무)

- 가. 지원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지정하는 자의 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나. 본 협약 당사자에 대한 일체의 통지, 통보 등은 협약서에 기재된 상대방의 주소로 내용증명 및 등기우편 또는 전자문서 등 서면으로 해야 하며, 지원기업의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즉시 주관연구개발기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 다. 그 밖에 본 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제출, 통지 및 보고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요령, 관리지침에 정한 바를 따른다.
- 라. 지원기업 및 지원인력은 협약 종료 후 5년간 연구성과 및 고용유지 등 현황조사 요구에 협조해야 한다.

제11조(협약불이행에 따른 사후 조치)

-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조(협약의 해약)'을 근거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지원기업 또는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이를 해당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그 집행을 대행할 수 있다.

- 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지원기업이 '가'항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다. '가'항 및 '나'항의 각 제재 또는 환수 사유 및 절차,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요령 및 관리지침을 따른다.

제12조(이의신청)

지원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본 협약 제6조 및 제7조에 정산 및 평가결과, 제11조에 따른 제재에 관한 통보를 받은 경우, 그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주관연구개발기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관련법령 및 규정의 준수)

- 가. 지원기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규칙」,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요령, 지침과 본 협약을 준수해야 한다.
- 나. 관련법령 및 규정이 개정되거나 기타 본 협약을 규율하는 새로운 법령 등이 제정되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고지로서 제8조에 기한 협약 변경절차에 갈음하며, 변경된 법령 등은 별도의 협약 변경 절차 없이 본 협약의 내용으로 인정된다.

제14조(기타)

- 가.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 나. 본 협약서(별첨서류 포함)는 종합관리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 첨부 1. 지원금 지급요청서 및 서약서 1부.
 2. 사용인감계(해당 시 제출) 1부.

20 년 월 일

주관연구개발기관 : (인)
 주소 :

지원기업 : (대표자) (인)
 주소 :

[별지 제2-②호]

지원금 지급요청 및 서약서

□ 지원금 지급요청

당사는 20××년 신진·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기업 및 지원인력 현황을 제출하오니, 20××년 지원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 및 지원인력 현황

기업명				대표자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소재지							
지원인력				생년월일			
지원학위				핸드폰			
인건비 (연봉)	차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A)*	기관부담 연구개발비(B)*	합계(A+B)			
	1차						
	2차						
	3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신청 시 제출한 금액과 동일하게 기재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입금(연구개발비 관리)계좌

은행명	입금계좌	예금주	비고

[붙임1] 실물통장 사본 1부(통장표지, 잔액 0원 페이지 포함)

[붙임2] 법인 인감증명서 1부(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인감증명서 1부)

□ 서약서

당사 및 본인은 신진·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 및 본인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협약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 당사 및 본인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기 승인된 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겠습니다.
3. 당사 및 본인은 협약이 해약되는 경우 정부지원 취소, 중단 및 지원금 반납조치 등을 감수하겠습니다.
4. 당사 및 본인은 지원사업 관리규정 및 신청제외기준을 명확히 숙지하고 정확히 준수 하겠으며, 만약 이의 불이행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당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20 년 월 일

위의 사실을 확인함

(기업명)

대표자 :

(인)

지원인력 :

(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귀하

연구성과 (연차, 최종) 보고서

기업명		대표자명	
지원인력명		협약기간	

1. 지원인력 활용효과

- 정성적 성과(5페이지 이내 작성, 연구증빙자료 및 NIIS 국가 R&D 참여과제 조회 첨부 필수)

<p>1. 연구과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p>2. 과제수행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p>3. 지원인력 역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p>4. 연구성과 및 목표달성 정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p>5.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량적 성과(연구증빙자료 첨부 필수)

가. 지원인력이 수행한 연구개발 및 혁신활동으로 발생한 정량적 성과

구분(2차년)		건수	발명의 명칭	발명자명 (출원인)	출원일 / 등록일 (YYYY-MM-DD)	출원 / 등록 번호
국내 특허 건수	출원					
	등록					
해외 특허 건수(PCT포함)	출원					
	등록					

※ 지원인력이 발명자로 확인되어야 함

구분(2차년)		건수	논문명	학술지명 (발행처)	주저자명	공동저자명	발행일자 (YYYY-MM-DD)
국내 논문 건수	SCIE						
	비SCIE						
해외 논문 건수	SCIE						
	비SCIE						
국내 학술대회 건수							
해외 학술대회 건수							

※ 증빙서류: 논문 발표자료 사본(저자, 초록, 사사 표기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증빙으로 제출

※ 지원인력이 주저자(또는 공동저자)로 확인되어야 함

나. 지원인력의 참여로 회사에 발생한 정량적 성과

구분(2차년)	건수	시제품명 / 제품명	제작 업체명	출시 / 제작일 (YYYY-MM-DD)
제품화 (시제품 출시)				
매출 발생 기술 개발				

※ 증빙서류: 제품개발 사진 등 시제품 개발 관련 증빙자료

구분(2차년)	건수	기술실시 계약명	기술실시 대상 기관명(대표자명)	계약금액 (기술료)	최초 기술실시 계약체결일 (YYYY-MM-DD)
기술 이전(실시)					

※ 증빙서류: 기술이전 계약서, 기술실시 계약서, 기술료 입금 내역서 등

구분(2차년)	건수	인증 기관	인증내용		국가명	인증 획득일 (YYYY-MM-DD)
			인증명	인증번호		
기술 및 제품 인증 (해당 기술 / 제 품·서비스 분류)						

※ 증빙서류: 해당 인증서

구분(2차년)	건수	종류	포상명	포상내용	포상대상	포상기관	포상일 (YYYY-MM-DD)
포상 및 수상 실적							

※ 증빙서류: 사본, 사진 등 포상증빙자료 제출

다. 지원인력이 수행한 연구개발 및 혁신활동으로 개발된 기술 및 제품의 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경제적 성과

구분(2차년)	건수	매출액		합계 (백만원)	발생년도 (YYYY)
		국내 (백만원)	국외 (달러)		
사업화명		₩	\$	₩	
		₩	\$	₩	
		₩	\$	₩	
		₩	\$	₩	

※ 증빙서류: 매출원장, 세금계산서, 내부 회계프로그램 내역서 등

구분(2차년)	건수	발생금액		합계 (백만원)	발생년도 (YYYY)
		국내 (백만원)	국외 (달러)		
수입대체금액		₩	\$	₩	
		₩	\$	₩	
생산비용 절감액		₩	\$	₩	
		₩	\$	₩	

구분(2차년)	건수	투자사	국내외 구분	투자금액(억원)	투자연월 (YYYY-MM)
투자유치금액				₩	
				₩	
				₩	
				₩	

구분(2차년)	건수	기업명 (IPO: 상장 기업명) (M&A: 인수기업명 또는 합병후 기업명 또는 사업양수 기업명)	발생연월 (YYYY-MM)
주식시장 상장(IPO)			
M&A (인수합병)			

※ 주식시장 상장(IPO) : 지원인력 참여 후, 기업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에 상장

※ M&A(인수합병) : 과제 참여 후 타기업의 자산이나 주식을 획득하거나 결합

3. 수행평가 및 제안사항

--

붙임. 연구실적 증빙자료.

결 재	조사자	팀장

신진·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현장실태조사표

① 지원기업 개요

				구분	<input type="checkbox"/> 신진 <input type="checkbox"/> 고경력
기업명				대표자	
주소(연구소)				담당자	
지원기간	인력명	학위	생년월일	근무부서	담당업무
- () 차년)					

② 조사내용

구 분	조사항목	조사내용	
■ 자격요건	·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자격	<input type="checkbox"/> 연구소, 전담부서 유지여부() <input type="checkbox"/> 연구전담요원 자격유지 여부()	
		인력명	
	·지원인력의 자격요건 확인	고용보험 취득일	
		채용기준일 이후 이종고용 여부	<input type="checkbox"/> 이상없음 <input type="checkbox"/> 이상있음
■ 급여지급	·연봉(근로계약서 및 월별 지급계획서와 실제 지급여부	정규직 여부	<input type="checkbox"/> 이상없음 <input type="checkbox"/> 이상있음
		연 봉	만원
		지급현황	()년 ()월분 까지 지급완료
■ 상시 비치서류	·급여증빙서류	지원금 수령통장	<input type="checkbox"/> 이상없음 <input type="checkbox"/> 이상있음()
		급여대장	<input type="checkbox"/> 이상없음 <input type="checkbox"/> 이상있음()
		급여이체 내역	<input type="checkbox"/> 이상없음 <input type="checkbox"/> 이상있음()
	·협약서 및 서약서		<input type="checkbox"/> 이상없음 <input type="checkbox"/> 이상있음
	·근태관리		<input type="checkbox"/> 이상없음 <input type="checkbox"/> 이상있음

③ 연구인력 활용 및 연구성과 실적

--

④ 동 사업 대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

⑤ 다음사항의 경우 지원기관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향후 동 사업 등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인력 인건비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유용하거나 월별 급여 지급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 협약이후 동사업의 신청서류 또는 각종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밝혀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지원인력의 퇴사 등으로 협약포기 시 관련서류를 퇴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동 사업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여 계속적인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이외 관리지침 '10. 지원대상 선정취소 및 협약의 해약'에 해당하는 경우

상기 사항에 대하여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담당자	(인)
--------------------------	-----	-----

⑥ 현장실태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

※ 협약해약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사항	이상없음	이상있음
1 · 지원금을 인건비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유용		
2 · 지원인력의 부당해고 또는 불법근무		
3 · 지원인력의 타 기관 상근 종사		
4 · 기타 협약의 해약이 불가피한 경우		
※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	이상없음	이상있음
5 · 지원인력의 급여 지급계획 미준수(급여미지급)		
6 · 제출서류의 기한내 미제출		
7 · 상시 비치서류 미비		
8 · 기타 지원대상기업의 시정이 필요한 사항		
※ 종합의견(조치사항)	조사결과 (A:우수 B:보통 C:관리요망)	

⑦ 실태조사 확인

구 분	직 위	성 명	직 위	성 명
면담자		(인)		(인)
		(인)		(인)
		(인)		(인)
조사년월일	20 년 월 일		방문장소	

[별지 제3-⑤호]

구분	<input type="checkbox"/> 신진	<input type="checkbox"/> 고경력
----	-----------------------------	------------------------------

신진·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지원인력 점검표			
기업명		지원인력 성명(작성자)	20 . . . _____(서명)
연락처(핸드폰)		E-mail	
연구소 소재지(근무지)			
협약기준 (해당차년)	<input type="checkbox"/> '00년도 0월 협약 (1차년)	<input type="checkbox"/> '00년도 0월 협약 (1차년)	<input type="checkbox"/> '00년도 0월 협약 (1차년)
	<input type="checkbox"/> '00년도 0월 협약 (2차년)	<input type="checkbox"/> '00년도 0월 협약 (2차년)	<input type="checkbox"/> '00년도 0월 협약 (2차년)
	<input type="checkbox"/> '00년도 0월 협약 (3차년)	<input type="checkbox"/> '00년도 0월 협약 (3차년)	<input type="checkbox"/> '00년도 0월 협약 (3차년)

1. 귀하는 지원기간 중 급여(협약연봉 기준)를 문제없이 지급받으셨습니까?

예 아니오(아래 세부 문항(1-1)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1. 급여(협약연봉 기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금액과 사유를 기재해 주십시오.

(사유: _____ / _____ 원, _____ 개월분)

※ 급여 미지급사실 허위 보고 시 동 사업 참여제한 및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는 지원기간 내에 지급 받은 급여에 대해 기업 또는 기업관계자에게 반납한 적이 있습니까?

예 (사유: _____ / _____ 원, _____ 개월분) 아니오

※ 필수 체크

※ 급여 미지급사실 허위 보고 시 동 사업 참여제한 및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개발 인력현황에 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예 아니오(사유: _____)

※ 연구소 담당자에게 확인 요망

※ 연구원으로 미등록 시 동 사업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연구소 인정취소 등 행·재정 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는 지원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만 상근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사유: _____)

5. 귀하는 지원기간 중 고용보험을 타기관 등에 가입하지 않고, 지원기업에만 가입되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사유: _____)

※ 동사업 지원기업 외의 타기관 등에 고용보험이 이중 등록 된 경우, 채용지원대상 지정취소 및 지원금 전액환수 등 행·재정 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귀하는 동 사업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받으면서 타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타사업 미참여 타사업 참여 (현금참여 현물참여(%))

※ 지원인력이 동 사업 참여기간 동안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이종으로 수혜 받을 경우, 채용지원대상 지정취소 및 지원금 전액환수 등 행·재정 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지원인력의 전(前)월 연구실적에 대해 간단히 작성해 주십시오.

--

8. 기타 변경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세부사항을 작성해 주십시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input type="checkbox"/> 기업명		
<input type="checkbox"/> 대표자		
<input type="checkbox"/> 주소	• 본사 :	• 본사 :
	• 연구소 :	• 연구소 :
<input type="checkbox"/> 행정담당자	• 성명 :	• 성명 :
	• 부서/직책 :	• 부서/직책 :
	• 연락처(회사) :	• 연락처(회사) :
	• 휴대전화 :	• 휴대전화 :
	• 이메일 :	• 이메일 :
<input type="checkbox"/> 지원인력	• 퇴사(년 월 일) 또는 퇴사예정(년 월 일) 또는 휴직(년 월 일)	

- ※ 대표자, 연구소주소, 담당자 변경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에 문의하여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점검표는 지원인력이 직접 작성하여 주시고, 상기 사항에 대하여 허위 보고 시 지원금 환수 및 동 사업 참여제한 등의 행·재정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점검표 2회 이상 미회신 시 차기사업 선정과정에 불이익과 현장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지원인력의 퇴사 및 연구소 취소 등으로 중단 시 관련서류를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환수 또는 행·재정 상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